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96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0.

발 의 자 : 송옥주 · 이병진 · 주철현
이수진 · 전종덕 · 한민수
한정애 · 윤준병 · 문대림
추미애 · 김남희 · 김태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·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, 시행령에서 등록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, 내장형은 분실 위험이 없고 효율적이지만 일부 보호자는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등록을 꺼리고 있고 외장형은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손쉽게 분실되거나 고의로 제거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방법을 추가하여 소유자가 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, 등록동물의 등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록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과

이에 필요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1항 등).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본문 중 “등록대상동물을”을 “생체정보 등록, 무선전자개 체식별장치 부착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대상동물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(이하 이 조에서 “등록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다.

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록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)	제15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)
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·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<u>등록대상동물을 등록</u> 하여야 한다. 다만,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생체정보 등록,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대상동물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②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(이하 이 조에서 “등록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95조 제2항에 따른 국가정보시스템</u>

<u><신 설></u> ⑦ (생 략)	<u>등과 연계할 수 있다.</u> ⑧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록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u> ⑨ (현행 제7항과 같음)
--	---